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0
----------	-----

제출년월일 : 1995. 5. 23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전기수용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등 사무의 권한 신설
- 종교의식용 피아노(전자오르겐 포함)의 면세 용도증명서 발급내용 신설
-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행정처분권한 위임
- 소음·진동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행정처분권한 위임
-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및 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인가사항 신설
- 이륜자동차에 대한 도난말소 등록, 개선명령, 구조 및 장치변경 등 신설
- 수렵강습 운영에 관한 사무중 위탁대상기관의 추가지정.

근거법령 【따로붙임】

- 지방자치법 제95조
-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제42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18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48조, 제68조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5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지방과소관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공업과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0호 다음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공업과	1	◦ 전기사업자의 타인토지 출입허가	전기사업법 제56조제2항, 제5항
	2	◦ 10만V미만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권한사항 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출 및 변경명령 나. 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신고 수리	동법 제44조제1항및제2항 동법 제45조제7항
	3	◦ 10만V미만으로서 전기수용설비 500Kw미만 및 발전기용량 200Kw미만의 자가용수용설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사계획신고 및 공사계획 변경신고 나. 공사계획 변경명령 다. 확인점검 라. 업무보고 명령 및 물건의 검사 마. 기술기준 적합명령	동법 제32조제2항 동법 제32조제3항 동법 제41조2항 동법 제63조 동법 제42조
	11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확인점검 나. 기술기준 적합명령	동법 제41조제3항 동법 제42조
	12	◦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공간 사용허가	동법 제57조제2항
	13	◦ 손실보상에 대한 재정신청	동법 제58조제2항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문화체육과소관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문화 체육과	8	○ 종교의식용 피아노(전자오르겐포함)의 면세 용도증명서 발급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16호, 동법시 행령 제30조제2항제1 의2호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환경관리과소관사무를 다음과 같이하고, 환경지도과소관 제9호 다음에 제10호 내지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환경 관리과	1	○ 호소특정시설의 설치신고	수질환경보전법제36조 폐기물관리법 제10조
	2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3	○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수집운반업, 다량배출수집운반업, 중간처리 업, 최종처리업 포함.)	동법 제17조
	4	○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수집운반업, 다량배출수집운반업, 중간처리 업, 최종처리업 포함.)	동법 제19조
	5	○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신고	동법 제44조의2제1항
	6	○ 일반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
	7	○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동법 제46조
	8	○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시의 청문 (수집운반업, 다량배출수집운반업, 중간처리 업, 최종처리업 포함.)	동법 제57조
	9	○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63조제2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환경 관리과	10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소음진동규제법제9조
	11	○ 배출시설 설치기간 연장 신청의 수리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동법 시행령제2조제4항
	12	○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인정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동법 제10조
	13	○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동법 제10조의2
	14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동법 제1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환경 관리과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방지사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쇄신고 수리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 만, 대기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 칙 제16조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및 가동개시일의 변경 신고수리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 만, 대기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동법 제13조제1항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또는 변경허가 부합여부 확인 및 조치 명령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 만, 대기 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 위에 포함) 	동법 제13조제3항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입신고의 수리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 만, 대기 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 위에 포함) 	동법 제21조
환경 지도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가동상태 점검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 만, 대기 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됨) 	소음진동규제법 제13 조제4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 경 지도과	11	○ 개선명령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 만, 대기 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됨)	소음진동규제법 제15조
	12	○ 조업정지명령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 만, 대기 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 위에 포함됨)	동법 제16조
	13	○ 시설의 이전명령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 만, 대기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 에 포함됨)	동법 제17조
	14	○ 허가의 취소 등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 만, 대기 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 위에 포함됨)	동법 제18조
	15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 만, 대기 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 위에 포함됨)	동법 제19조
	16	○ 환경관리인 변경명령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사업장 제외 다 만, 대기 1~2종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 위에 포함됨)	동법 제2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환경 지도과	17	○ 운행차의 수시 점검	소음진동규제법제37조
	18	○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수리	동법 제38조
	19	○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61조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교통행정과소관 제15호 다음에 제16호 내지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교 통 행정과	16	○ 임시운행의 허가(시행령 제11조제4호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7	○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도난말소등록(법 제13조제5항) - 개선명령(법 제23조) - 임시운행허가(법 제26조) - 구조 및 장치의 변경(법 제33조) - 점검 및 정비명령(법 제35조제1호 제외)의 규정 준용	동법 제48조
	18	○ 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인가	동법 제68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민간위탁사무중 산림녹지과소관 제3호 위탁대상기관에 한국자연생태
계보전업도협회 충청북도지부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